

의안번호	2204044
의 퇴 인	송옥주 의원
회 답 일	2024.11.12.
추 계 번호	24B3828
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)	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음(제2항) 1. 출산·질병·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2. 일시적·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(해당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.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5조(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)	×	- 미첨부 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

2. 상세 사유

- 현행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은 출산·질병·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·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파견사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
- 개정안은 현행법상 예외규정으로 허용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사용 요건을 강화(안 제5조제2항제2호)하는데 입법취지가 있음

- 개정안이 시행되면, 출산·질병·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뿐만 아니라 일시적·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(해당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)에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므로 국가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승인 신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노동부의 인건비 및 행정비용이나, 장래에 발생할 승인 신청물량을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어려움
 - －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승인 신청수와 행정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소요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배아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